

 환경부 <small>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25일 조간 (10.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성수호 과장 / 박은혜 사무관 044-201-6790 / 6798
	배포일시	2019. 10. 21. / 총 8매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 ◇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 및 주기적인 측정의무 강화(2년 1회 권고 → 연 1회 측정의무)
- ◇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부고시)	개정안 (환경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mu\text{g}/\text{m}^3$ ▶ 이산화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시 2,500, 비혼잡시 2,000p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PM-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mu\text{g}/\text{m}^3$ (차종 구분 없음) ▶ 이산화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 (주기적 측정의무)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 * 전력공급 및 공간 제약, 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중량법 및 베타선법 적용이 어려워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인정 필요
 - 한편,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m^2 이상으로 정했다.

-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 기타 개정사항 >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2.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박은혜 사무관(☎ 044-201-67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제3조)
- ② 현행 임의규정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제4조의5)
- ③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및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제4조의7), 측정기기 부착의무 위반 및 결과 미공개 등의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제16조제3항)
- ④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 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제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제9조의3 신설)
- ⑥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과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13조제5항 신설)
- ⑦ 지하역사 등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제9조의4 신설),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제9조의5 신설)
- ⑧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제12조제1항)
- ⑨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 공개 의무화(제13조제6항)

《 다중이용시설 》

- 법 적용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시행령 안 제2조)
 - (연면적 기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 시설로 규정
-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시행령 안 제4조의3)
 - (시설군)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5개 취약계층이용시설**
 - (오염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3종**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시행규칙 안 제2조의2)
 - (측정물질 및 설치위치) **PM2.5** 측정기기를 역사 승강장에 설치

《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시행규칙 안 제7조의4)
 - (권고기준 설정물질) **PM2.5, 이산화탄소 2개** 물질
 -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광산란방식 측정기 사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PM2.5 권고기준** 설정

현 행 (환경부고시)	개 정 안 (환경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PM-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mu\text{g}/\text{m}^3$ ▶ 이산화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시 2,500, 비혼잡시 2,000p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PM-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mu\text{g}/\text{m}^3$ (차종 구분 없음) ▶ 이산화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시행규칙 안 제7조의3)
 - (측정물질) **PM2.5, 이산화탄소 2개** 항목(권고기준 설정물질과 동일)

- (대상차량) 총 2만여대 차량 중 노선별·운행시간대별 실내공기질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하여 측정의무 부여
 - 운송사업자별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 이상에 대해 측정 실시
- (측정횟수) 현행 2년에 1번 권고 → 1년에 1번 측정 의무화
- (측정결과 보존) 결과 보존 기간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10년으로 하되,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전산입력 시 서류 보존의무 면제

《 기 타 》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 개편(시행령 안 제4조의2)
 -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협의체 위원을 지자체 공무원, 민간위원 등으로 확대
-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시행규칙 안 제12조)
 - (기초→광역시지자체) 매년 1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 (광역시지자체→환경부) 매년 2월 말까지 기초지자체로부터의 보고 결과 및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시행령 별표)
 -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시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 ① 미세먼지 :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 유발
 -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10월)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10 μ m 이하)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2.5 μ m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 μ m)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②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대규모점포, 영화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25개 시설군이 이에 해당됨
- ③ 대중교통차량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철도 및 직행형·고속형 시외버스가 이에 해당됨(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음)
- ④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중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놀이터가 이에 해당됨
- ⑤ 오염도검사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 등의 검사(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⑥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동측정장비*로, 미세먼지(PM10 및 PM2.5)의 경우 통상 베타선흡수법을 활용한 기기를 의미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를 뜻하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이측정기(광산란 방식)는 해당되지 않음